

산가금 유통방역관리제 운영 지침

출처 : 농림축산식품부

1. 목적

- **(추진배경)** 2003년 이후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라 사회적 및 경제적으로 피해와 혼란이 가중되었고 가금 산업의 위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.
 - 이와 관련되어 발생에 따른 역학조사·분석 결과에 따르면, 동절기 AI 발생 시 하절기까지 이어진 경우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한 토종닭·오리 등의 거래 과정에서 바이러스 순환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었다.

〈과거 전통시장 및 소규모 농가 바이러스 순환을 통한 발생 사례〉

- ▶ ('14 ~ '16년) ① '14년 9월 발생은 토종닭·오리를 취급하는 전통시장 거래상을 통한 상반기에 발생한 오리농가와 교차오염으로 재발생 추정, ② '15년 9월은 전통시장 거래상인 계류장에서 바이러스 순환을 통한 재발생
- ▶ ('17년 6.2.~6.19.) 전통시장 거래상과 전문적으로 거래하는 오골계 사육 농가에서 발생한 AI가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전통시장을 통해 7개 시·도, 14개 시·군·구 소규모농가로 전파 (총 36호 발생)

- 이에 따라, '17.9월 AI 방역종합대책 수립 시 방역취약 대상인 전통시장과 소규모 농가에서 AI 바이러스 순환방지 등 AI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방안이 요구되었다.
- **(추진방향)** 국내 토종닭 사육은 도축장(약 70%) 및 전통시장(약 30%)을 통해 유통되고 있어 단기간 내 사육 및 유통구조를 개편하기 어려운 사정이며, 대책 마련 시 소규모 도축장을 보급하여 '22년부터 전통시장에는 살아있는 가금에 대하여 유통금지를 목표로 과제가 추진되었으며, 이에 따라 전면 유통금지 이전 까지 가축거래상인, 살아있는 가금 위주의 전통시장·가든형 식당 등 방역취약 대상에 AI 발생 위험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가금 유통과정의 방역위생 강화 차원으로 동 지침을 운영할 예정이다.

2. 산기금 유통방역관리제 운영 지침 개요

- 2.1. 동 지침 운영은 2019년 7월 1일 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한다.
- 2.2. 지침 운영 주관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이며, 농림축산검역본부, 전국 시·도, 시·도 동물위생연구소, 시·군·구에서 참여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산하기관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와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참여하여 운영된다.
- 2.3. 지침 운영 시 활용하는 전산시스템은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운영하는 축산물이력제 시스템의 전산시스템을 활용한다.(전산망 구축 시 부터 활용)
- 2.4. 동 제도의 참여대상은 가금거래상을 통해 가금을 판매하는 농장, 전통시장 가금판매소(비상설 시장 포함), 가금거래상, 가금거래상 계류장, 가든형 식당(가금 사육)으로 한다.
- 2.5. 정부(농림축산식품부, 지자체 등)는 동 지침 시행 이후 참여하는 대상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지침에 따라 수행하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.

산기금 유통방역관리제 지침 운영	
등록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전통시장 거래농장, 가금거래상인, 계류장, 전통시장 가금판매업소, 가든형식당 (살아있는 가금 사육)
▼	
등록대상 의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등록대상 의무 : 시 정기검사, 방역 교육이수, 방역당국의 점검, 매월 휴업·소독 등 (발생상황에 따라 별도 운영)
▼	
등록 관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지자체(시·군·구): 등록대상에 대해 현황파악 후 등록 관리 ※ 가금농장과 판매업소 등은 등록, 검사완료시 산기금 유통 가능
▼	
상시관리 /보고의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상시관리 : 등록자가 지침에 따라 상시 차단 방역관리 ■ 보고의무 : 등록자(사육수수, 구입수수, 판매수수, 거래내역서 등 현황) 등록 → 지자체 관리
▼	
시 검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검사방법 : 등록자 → 검사 의뢰 → 검사 기관(지자체 시험소) → 검사결과통보(이동 승인서 발급 등) ■ 검사주기 : 정기 검사, 출하 전 검사 원칙
▼	
점 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점검방법 : 지자체/검역본부에서 동 지침 이행여부 점검 ■ 위반시 조치 : (농장, 가금거래상인, 계류장, 판매업소) 등록 취소 (등록 취소 후 약 14일 이후 시 검사 음성시 재등록 가능)

※ 전산시스템 운영은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붙임1

단계별 지침 운영 요약

단계	구분	주요 추진사항	주체별 수행사항
생산 (전통시장, 가든형식당 판매농장)	등록	· 전통시장 거래 모든 농가 등록 (전통시장, 가든형식당 판매농장)	· (농가) 등록 신청서 제출 · (시·군·구) 등록 관리(교유 식별번호 부여) * 전산시스템 개발시 전산입력 ** 출입시설에 등록마크 부착
	교육	· 교육 실시(1년 주기)	· (농가) 교육 이수(수료증 보관) · (시·군·구) 교육 주최(년 1회)
	기록관리	· 기록관리 의무 준수 철저	· (농가) 폐사기록(필요시 산란기록), 입식·출하, 출입자·차량, 검사증명서 * 가축방역관 농장 점검 시 자료 제공 · (시·군·구) 등록정보 보관 관리 * 전산지침 개발 시 전산입력
	AI 검사 및 기록	· 출하 등 이동 전 검사	· (농가) 검사의뢰 · (시·군·구) 가축방역관 또는 공수의 AI 검사 및 이동승인서 발급 * 전산시스템 개발시 전산입력
		· 정기 검사(2월 1회)	· (시·군·구) 검사 * 필요시 시·도 시험소 정밀검사
점검	· 이행실태 점검(기록관리 및 시료채취 등 지침 준수 여부)	· (지자체) 정기 점검(월 1회) · (검역본부) 특별점검(필요시)	
유통 (가금 거래상/계류장)	등록	· 등록 의무화 · 계류장 등록(허가)	· (거래상인) 등록 신청(계류장 포함) · (시·군·구) 가금거래상인 등록(교유식별번호 부여) * 운반차량에 등록마크 부착
	교육	· 맞춤형 교육 실시(1년 주기)	· (거래상인) 교육 이수(수료증 보관) · (토종닭 협회) 교육 주최
	기록관리	· 검사증명서(이동승인서) · 계류장 입식·출하, 폐사 기록 · 거래내역서 작성	· (거래상인) 검사증명서 휴대, 거래내역서 작성 보관(1년간 보관) · (시·군·구) 입식·출하, 폐사기록 확인
	방역위생 관리	· 가금운반차량은 축산차량 등록 의무 이행(GPS 등록) · 가금운반차량 세척·소독(주 1회 이상)	· (거래상인) 가축운반차량 주 1회 이상 세척·소독, 소독실시기록부 작성 · (시·군·구) 축산차량 등록 및 GPS 등록 관리
	AI 검사 및 기록	· (계류장) 2월 1회 검사, 출하 전 검사 · (차량) 환경검사년 4회	· (시·군·구) 계류장 간이검사 · (방역본부) 차량 시료채취 · (시·도 시험소) 차량 정밀검사
	점검	· 월 1회 이상 정기점검 · 무작위 불시 점검	· (시·군·구) 정기 점검(월 1회) · (검역본부) 특별점검(필요시)
	계류장 휴업·소독	· 평시 월 1회, 특방기간 월 2회, 발생기간 주 1회	· (거래상인) 계류장 휴업·소독 실시

단계	구분	주요 추진사항	주체별 수행사항
판매 (가금판매소)	등록	· 가금판매소, 중추판매시장(비상설 시장 포함) 등록 의무	· (시·군·구) 업소 등록(고유번호 부여) · (읍·면·동) 중추 판매시장 등록 신청 * 출입시설에 등록마크 부착
	교육	· 맞춤형 교육 실시(1년 주기)	· (업소) 교육 이수(수료증 보관) · (협회) 교육 주최
	기록관리	· 가금 거래내역서 기록 보관(2년간) · 검사증명서(이동승인서)	· (업소) 기록관리
	방역위생 관리	· 가금케이지, 판매장소 세척·소독	· (업소) 세척·소독
	시 검사 및 기록	· 전통시장 내 가금판매소 검사(1회/2월) · 분기별 1회 환경검사	· (방역본부) 시료채취 · (검역본부) 2/4 분기 검사 · (시·도 방역기관) 1/3 분기 검사 · (시·군·구) 2월 1회 시검사
	점검	· 월 1회 이상 정기점검 · 무작위 불시 점검	· (시·군·구) 정기 점검(월 1회) · (검역본부) 특별점검(필요시)
	휴업·소독	· 휴업·소독(평시 월 1회, 특방기간 월 2회, 발생 시 주 1회)	· (업소) 휴업·소독 철저 준수 · (시·군·구) 준수여부 점검
판매 (가든형식당)	등록	· 가든형식당 등록 의무	· (시·군·구) 업체 등록(고유번호 부여) * 출입시설에 등록마크 부착
	교육	· 맞춤형 교육 실시(1년 주기)	· (업소) 교육 이수(수료증 보관) · (시·군·구) 교육 주최
	기록관리	· 가금 구입 기록 보관(1년간)	· (업소) 거래기록 보관
	방역위생 관리	· 발판소독조 운영	· (업소) 발판소독조 운영
	시 검사 및 기록	· 가든형식당 검사(2회/월)	· (시·군·구) 2월 1회 시검사
	점검	· 정기점검(2월 1회) · 무작위 불시 점검	· (시·군·구) 정기 점검(월 2회) · (검역본부) 특별점검(필요시)

붙임2 등록대상별 법령·고시·SOP 등 방역 준수사항

등록대상	방역준수사항
전통시장 판매 가금농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매일 임상증상(폐사, 산란율) 확인 및 기록(월 1회 시군 제출) ○ 월 1회 방역시설 점검 및 시군 제출 ○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, 소독기록부·출입기록부 작성, 2년 1회 정기 교육 ○ 입식 전 신고(시군·구), 가금출하시 이동승인서 발급, 거래내역 대장 기록
가금거래상인 (계류장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가금거래상인) 가축거래상인 등록(계류장 신고), 거래내역 기록·보관, 이동승인서 보관, 농장 등 출입 시 소독, 소독기록부 작성, 2년 1회 정기 교육 ○ (계류장) 매일 임상증상(폐사, 산란율) 확인 및 기록(월 1회 시군 제출), 월 1회 시설 점검 및 시군 제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, 소독기록부·출입기록부 작성, 2년 1회 정기 교육 - 입식 전 신고(시군), 가금출하시 이동승인서 발급, 거래내역 대장 기록 - 휴업·소독의날 운영(평시 월 1회, 특방기간 월 2회)
가금판매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가금 거래내역서 작성, 검사증명서(이동승인서) 보관 ○ 휴업·소독의날 운영(평시 월 1회, 특방기간 월 2회)
가든형식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가금 거래내역서 작성, 검사증명서(이동승인서) 보관, 주기적 소독 실시 (주1회 이상), 사육시설이 10㎡ 이상인 경우 허가 또는 등록

※ 교육 수수료 규정은 2020.1월 시행 예정, 입식 전 신고(농식품부 장관 지시)

